보도자료 2024. 3. 25.		양형위원회	
	문의	운영지원단장 문중흠 (☏ 02-3480-1924)	

양형위원회 3/25(월) 제130차 회의 결과

양형위원회(위원장 이상원)는 2024. 3. 25. 15:05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30차 전체회의를 열어, 1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, 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, 3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, 의결하였음

☑ **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등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양형위원회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, 심의하여 양형기준 최종 의결**

☑ **시행일: 2024. 7. 1.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**

☑ **별첨: 의결된 최종 양형기준**

1 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☞ 수정 의결

1. 원안의 주요 내용: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강화 및 합리화

▣ **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'산업기술 등 침해행위' 유형(대유형 4)을 신설하고, 양형기준의 명칭을 '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'로 수정**

○ 기술침해범죄를 독립된 유형으로 분리하고, 기존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국가핵심기술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형량범위표와 양형인자표를 설정함으로써 **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**에 맞는 **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함**

○ **기술침해범죄의 중요성**과 **지식재산범죄와의 보호법익 차이**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명칭을 '지식재산권범죄'에서 '지식재산·기술침해범죄'로 수정함

▣ **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, 기술침해범죄에 대하여**

강화된 권고 형량범위 제시

○ **부정경쟁방지법 법정형 개정, 영업비밀 보호 강화 요청 등을 반영**하여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량범위를 상향함

○ **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**하여,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설정함

-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의 경우 최대 18년까지 권고(산업기술 국내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6년 → 9년으로, 산업기술 국외침해의 최대 권고형량은 기존 9년 → 15년으로 상향)

▣ **특별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 강화**

○ **특별가중인자인 '권리자(피해자)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', '비밀유지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'의 범위를 확대**함

- 전자(前者)에 '상당한 금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특허권, 영업비밀, 기술 등을 침해한 경우'도 포함시키고, 후자(後者)에 '피고인이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비밀로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자인 경우' 등을 추가함

○ **특별감경인자인 '영업비밀(기술)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'의 정의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수정**하여 유출된 정보가 반환·폐기되어 결과불법이 낮은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하고, **'자수'를 '자수,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'로 수정**하여 암수 범죄 적발 및 추가피해의 방지를 유도함

○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(대유형 3, 4)에서 **'형사처벌 전력 없음'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서 제외**하고, 기술침해범죄(대유형 4)에서 **'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'를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설정**하는 등 **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함**

2. 수정 의결 사항

▣ **특별감경인자 및 집행유예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에 '미필적 고의로 범행을**

저지른 경우’ 를 추가함

○ 공청회 및 각급 법원, 자문위원 등의 의견에 따라, ① 다수 범죄군에서 특별감경인자로 참작하고 있고, 실무에서도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점, ② 지식재산범죄의 침해판단이 어려운 특성이 있고,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, ③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행위불법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을 수정하기로 의결함

2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최종 의결 ☞ 수정 의결

1. 원안의 주요 내용: 스토킹범죄 양형기준(벌금형 포함) 신설

☞ 양형실무와 사건 증가 추이, 법정형이 동일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되,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**스토킹범죄의 특수성 내지 위험성**, **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** 등을 함께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신설함

☞ 잠정조치 등 위반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낮으나, 강력 범죄로의 발전을 조기에 차단하고,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형기준 설정범위에 포함시킴

▣ 권고형량범위 및 형종 선택의 기준

○ **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**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**최대 5년(법정형 상한)**까지 권고

○ **일반 스토킹범죄**는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의 경우 **최대 3년(법정형 상한)**까지 권고

○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에서는 징역형만을 권고함. 일반 스토킹범죄의 가중영역이나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의 일반영역, 잠정조치 위반의 가중영역에서는 ‘처벌불원’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

▣ 양형인자

○ **‘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자를 야기한 경우’**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면서,

정의규정에 '피해자 등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정생활, 학업, 생계 등에 있어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'를 포함시킴

○ **'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'**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되, 정의 규정에 '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', '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'를 포함시킴

○ 특별가중인자인 **'동종 전과'**의 범위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, 주거침입, 성범죄 등의 범죄를 폭넓게 포함시킴

▣ **공탁 관련 양형인자 정비**

○ 감경인자인 '실질적 피해회복(공탁 포함)' 및 '상당한 피해회복(공탁 포함)'에서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를 모두 삭제함

- 공탁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하나, '(공탁 포함)'이라는 문구로 인하여 마치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인자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

2. 수정 의결 사항

▣ **동종 전과 범위 확대(약취·유인범죄 포함) 및 정의규정 명확화**

○ 여성가족부, 한국여성변호사회, 공청회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, 스토킹범죄와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인 **'약취·유인범죄'를 동종 전과에 추가로 포함**시키는 것으로 원안을 수정하고, 동종 전과에 포함되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스토킹범죄를 의미하는 취지로 정의규정을 정비함

▣ **'범행에 취약한 피해자' 정의규정 수정**

○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'조직이나 단체 내 지휘감독관계'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한국여성변호사회, 한국여성의전화, 공청회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 등의 정의규정의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'범행에 취약한 피해자'의 정의를 수

정함

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, 연령, **조직이나 단체 내 계급, 서열 또는 지휘감독관계**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,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.

3 마약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☞ 수정 의결

1. 원안의 주요 내용: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, 대량범 및 대마범죄 양형강화

‘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 등’ 유형 신설 및 권고 형량범위 상향(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)

○ **최근 마약류 확산세** 및 **10대 마약범죄 증가 추세**에 대한 사회적 우려, 미성년자 대상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강화 필요성, 미성년자에 대한 대마 수수·제공 등 범행에 대한 법정형의 상향 등을 고려하여 **권고 형량범위 상향**

○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

대량범에 대한 양형강화

○ 마약범죄의 대량화 추세를 반영하여, 대량범(대유형 4)의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하고, 특정 마약범죄에 대한 마약가액 10억 원 이상 구간(제4유형)을 신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

04 | 대량범

유형	구분	감경	기본	가중
1	제1유형	2년 – 4년	3년 – 6년	5년 – ~~8년~~ 9년
2	제2유형	3년6월 – ~~6년~~ 7년	~~5년 – 9년~~ 6년 – 10년	~~7년 – 11년~~ 8년 – 13년
3	제3유형	6년 – 9년	8년 – 11년	10년 – ~~14년~~ 15년
4	제4유형	8년 – 12년	10년 – 15년	13년 이상, 무기

○ 최근 단일 사건으로 적발되는 밀수 마약류 규모의 거대화 및 마약류 압수

량의 증가 추세 등을 반영하여 **대량범의 형량구간(10억 원 이상, 제4유형) 신설**

※ 10억 원 상당은 필로폰 약 10kg, 헤로인 약 12kg에 해당, 필로폰 10kg은 약 33만회 투약 분량(1회 투약 분량 0.03g)

▣ **대마범죄에 대한 양형강화**

○ 소위 '게이트웨이 드러그(Gateway Drug)'라 불리는 대마에 대한 수출입죄뿐만 아니라 투약, 단순소지 등 범죄에 대하여도 권고 형량범위를 상향

▣ **양형인자 정비**

○ 특별가중인자인 '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'에 '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사용, 투약, 제공한 경우' 및 '다른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'를 포함시키고, 매매·알선, 수출입·제조 등 범죄에서 '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'를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는 등 양형인자 정비

2. 수정 의결 사항

▣ **미성년자에 대한 매매·수수 등(대유형 2, 중유형 나): '인적 신뢰관계 이용'을 일반가중인자 추가**

○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, ①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에 더 취약한 점, ② 신뢰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'인적 신뢰관계 이용'을 일반가중인자로 추가

▣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(제131차 회의)

○ 일시: 2024. 4. 29.(월) 오후, 대법원 회의실

○ 안건: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 심의,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수정안(설정 범위, 유형 분류)